

제335회 임시회  
2014.10.24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 
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
# 교육위원회

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## 심사보고서

2014.10.24.(금)

교육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10월 02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10월 06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10월 14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종철)

가. 제안이유

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

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□ 재산의 취득 및 변경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기관명	구분	사업명	수량	금액
충청북도교육청	토지	가칭)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	14,834	857,680
	건물	가칭)석장중학교 교사 신축	10,344	22,098,464
	토지	가칭)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	14,378	1,246,980
	건물	가칭)석장고등학교 교사 신축	11,679	24,778,582
<b>합 계</b>		<b>(4건)</b>	<b>51,235</b>	<b>48,981,706</b>

#### ① (가칭)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

① 사업위치: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-2

② 주요내용

- 사업목적: 혁신도시 유입하는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
- 사업용도: 공립 중학교 설립
- 사업기간: 2015. 1.~2017. 2.
- 소요예산(총사업비): 22,956,144천원
  - 연도별소요액: 2014년도 857,680천원,  
2015년도 4,420,000천원,  
2016년도 17,678,464천원
  - 재원조달: 지방비 22,527,304천원, 기타 428,840천원
  - 재원별 사업비: 토지매입비 857,680천원(조성원가의 20%),  
건축비 22,098,464천원
- 사업규모
  - 토지 14,834m<sup>2</sup>, 건물 2동 4층 10,344m<sup>2</sup>
  - 주요(부대)시설: 교사동, 급식소 및 다목적체육관, 운동장,

## 주차장 등

- 기준가격: 토지1,369,178천원(공시지가 92,300원/m<sup>2</sup>),  
건축비 22,098,464천원
- 계약방법: 토지 - 수의계약 / 건물 - 공개경쟁입찰
- ③ 취득사유: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  
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

## ② (가칭)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

- ① 사업위치: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-2
- ② 주요내용
  - 사업목적: 혁신도시 유입하는 고등학생의 원활한 배치
  - 사업용도: 공립 고등학교 설립
  - 사업기간: 2015. 1. ~ 2017. 2.
  - 소요예산(총사업비): 26,025,562천원
    - 연도별소요액: 2014년도 1,246,978천원,  
2015년도 4,956,000천원,  
2016년도 19,822,582천원
    - 재원조달: 지방비 25,402,073천원, 기타 623,489천원
    - 재원별 사업비: 토지매입비 1,246,980천원(조성원가의 30%),  
건축비 24,778,582천원
  - 사업규모
    - 토지 14,378m<sup>2</sup>, 건물 2동 4층 11,679m<sup>2</sup>
    - 주요(부대)시설: 교사동,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, 운동장,  
주차장 등
  - 기준가격: 토지 1,344,343천원(공시지가 93,400원/m<sup>2</sup>),  
건축비 24,778,582천원
  - 계약방법: 토지 - 수의계약 / 건물 - 공개경쟁입찰
- ③ 취득사유: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 
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검토보고: 수석전문위원 정대희)

본 관리계획안은 진천·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등 3,500여 세대가 2018년까지 입주 예정인 바, 인근학교 학급 증설 방안으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여 중·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,

①~② 가칭)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과 가칭)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각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-2와 803-2에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5년 1월부터  
△가칭)석장중학교는 22,956,144천원을 들여 14,834m<sup>2</sup>의 부지에 건물 10,344m<sup>2</sup>를 취득하여 25학급 규모에 6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,  
△가칭)석장고등학교는 26,025,562천원을 들여 14,378m<sup>2</sup>의 부지에 건물 11,679m<sup>2</sup>를 취득하여 25학급 규모에 600명의 학생을 수용하려는 것으로, 위 두 건 사업이 포함된 진천·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은 2011년 1월 5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'적정'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: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 
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

## 2. 취득 대상 재산 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	취 득 시 기	취득 사유	취 득 소유자	비고
기관명	구분	소재지	수 량					
가칭)석장중학교	토지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-2	14,834	857,680	2015. 상반기	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	교육감	도면1
	건물		10,344	22,098,464	2017. 상반기			
가칭)석장고등학교	토지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-2	14,378	1,246,980	2015. 상반기	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	교육감	도면2
	건물		11,679	24,778,582	2017. 상반기			
합 계			51,235	48,981,706				

### 1 (가칭)석장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

① 사업위치: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2-2

② 주요내용

- 사업목적: 혁신도시 유입하는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
- 사업용도: 공립 중학교 설립
- 사업기간: 2015. 1.~2017. 2.
- 소요예산(총사업비): 22,956,144천원
  - 연도별소요액: 2014년도 857,680천원, 2015년도 4,420,000천원, 2016년도 17,678,464천원
  - 재원조달: 지방비 22,527,304천원, 기타 428,840천원
  - 재원별 사업비: 토지매입비 857,680천원(조성원가의 20%), 건축비 22,098,464천원
- 사업규모
  - 토지 14,834m<sup>2</sup>, 건물 2동 4층 10,344m<sup>2</sup>
  - 주요(부대)시설: 교사동, 급식소 및 다목적체육관, 운동장, 주차장 등
- 기준가격: 토지1,369,178천원(공시지가 92,300원/m<sup>2</sup>), 건축비 22,098,464천원
- 계약방법: 토지 - 수의계약 / 건물 - 공개경쟁입찰

③ 취득사유: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

## ② (가칭)석장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

① 사업위치: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3-2

### 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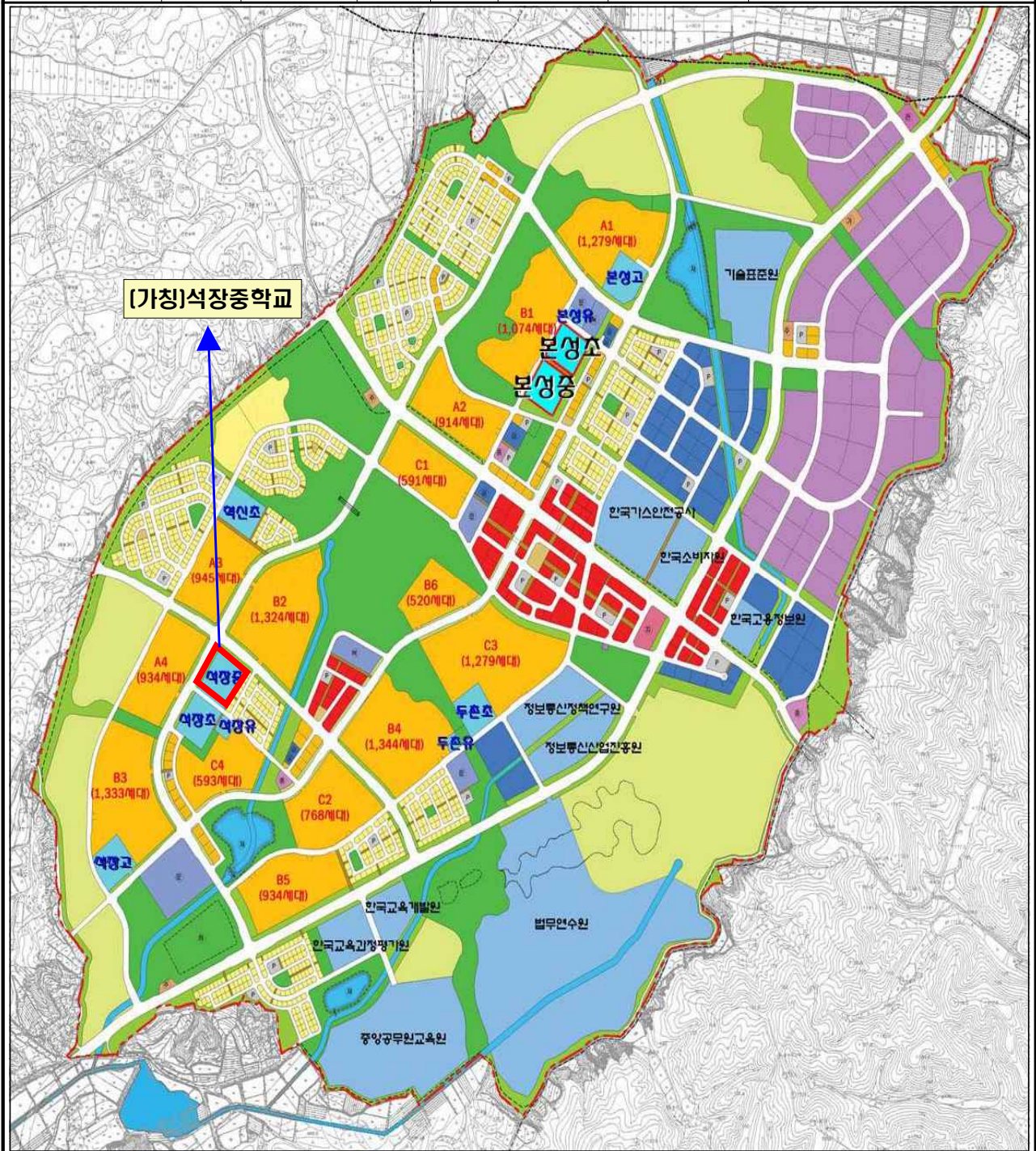
- 사업목적: 혁신도시 유입하는 고등학생의 원활한 배치
- 사업용도: 공립 고등학교 설립
- 사업기간: 2015. 1. ~ 2017. 2.
- 소요예산(총사업비): 26,025,562천원
  - 연도별소요액: 2014년도 1,246,978천원, 2015년도 4,956,000천원, 2016년도 19,822,582천원
  - 재원조달: 지방비 25,402,073천원, 기타 623,489천원
  - 재원별 사업비: 토지매입비 1,246,980천원(조성원가의 30%), 건축비 24,778,582천원
- 사업규모
  - 토지 14,378㎡, 건물 2동 4층 11,679㎡
  - 주요(부대)시설: 교사동,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, 운동장, 주차장 등
- 기준가격: 토지 1,344,343천원(공시지가 93,400원/㎡), 건축비 24,778,582천원
- 계약방법: 토지 - 수의계약 / 건물 - 공개경쟁입찰

③ 취득사유: 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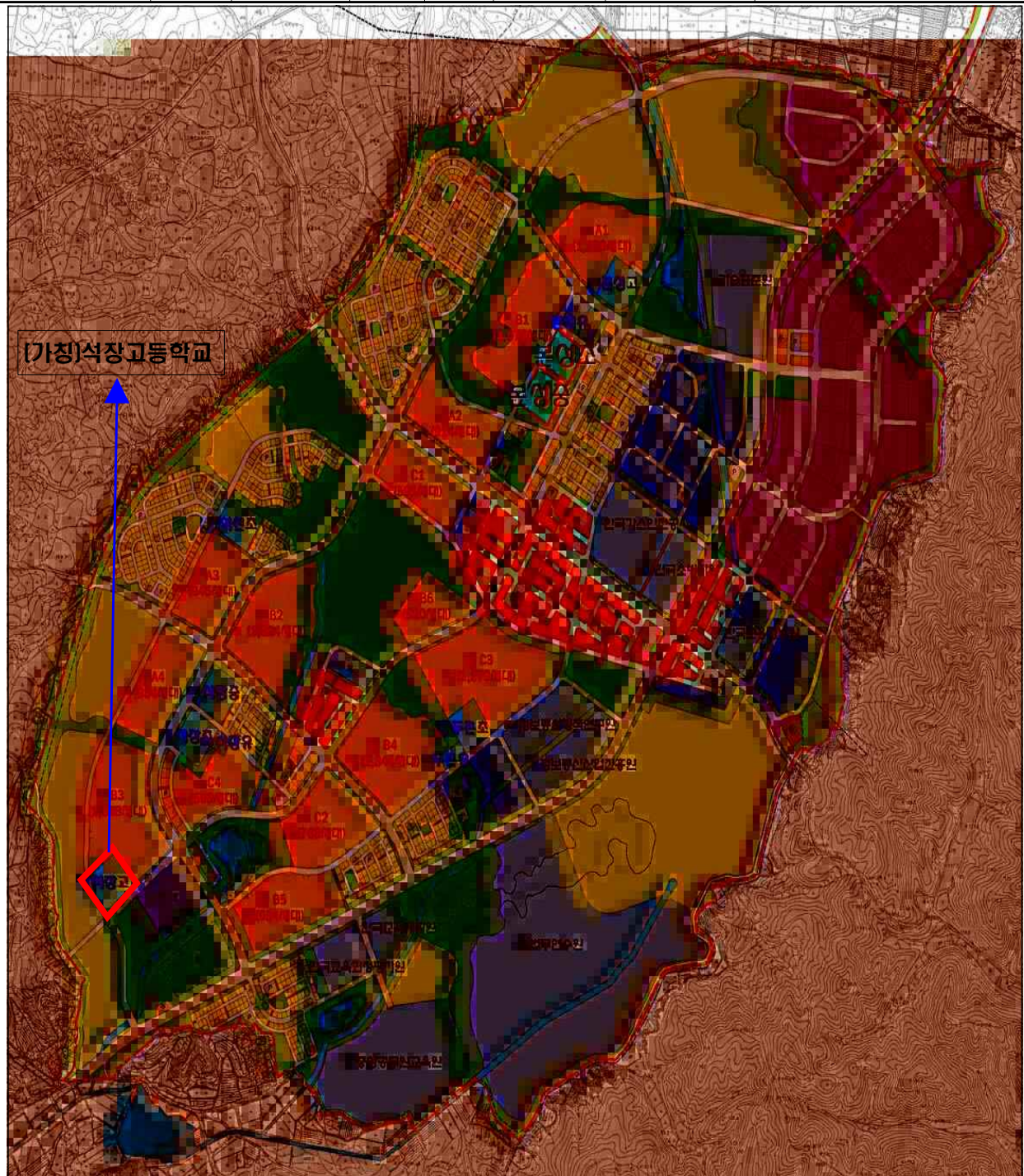
# 도면 1 : (가칭)석장중학교 설립 위치도

건 명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수량 (㎡)	추정금액 (천원)	사 유
(가칭)석장중학교 설립	토지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	802-2	대	14,834	857,680	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중학교 설립
	건물			철콘	10,344	22,098,464	
계					25,178	22,956,144	



## 도면 2 : (가칭)석장고등학교 설립 위치도

건 명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수량 (㎡)	추정금액 (천원)	사 유
(가칭)석장고 등학교 설립	토지	진천군 덕산면 석장리	803-2	대	14,378	1,246,980	혁신도시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고등학교 설립
	건물			철콘	11,679	24,778,582	
계					26,057	26,025,562	

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#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>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#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

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[전문개정 2009.4.24]

## 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

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